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53
----------	-----

제출연월일 : 2023년 2월 6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1. 제안이유

대규모 재난사고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재난안전의무보험에 해당하는 학원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가 재난안전의무보험의 보상한도보다 낮다는 평가에 따른 교육부의 권고로 학원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를 상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학원·교습소의 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를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 보상한도 금액에 적합하도록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을 ‘1인당 배상 금액 1.5억원 이상’으로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별첨 8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2(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이 갖추어야 할 기준 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4조의2(재난안전의무보험의 보상 한도 등)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2)

다. 협의 : 감사관,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예산담당관과 협의 완료

라.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1
- 입법예고(2022.10.20. ~ 11.9.) :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별첨 3)
- 규제심사 : 교육규제 심의결과(별첨 4)
- 부패영향평가 :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별첨 5)
- 성별영향분석평가 :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별첨 6)
- 학생인권영향평가 : 학생인권영향평가 검토 의견서(별첨 7)
- 관계법규 : 별첨 8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1억원”을 “1.5억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조례 시행 전 보험에 가입되어있는 학원·교습소는 해당 보험의 만기일까지는 이전 규정을 인정한다.

【별첨 1】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p> <p>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학원·교습소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p> <p>1. 1인당 배상금액 <u>1억원</u> 이상</p> <p>2.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단, 교습소의 경우 5억원 이상)</p> <p>3. 1인당 의료실비 보상금액 3천만원 이상</p> <p>② ~ ④ (생략)</p>	<p>제2조(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p> <p>① (현행과 같음)</p> <p>1. ----- <u>1.5억원</u>-----</p> <p>2. (현행과 같음)</p> <p>3. (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별첨 2】

[별지 제1호 서식]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학원·교습소의 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를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난 안전의무보험 보상한도 금액에 적합하도록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을 ‘1인당 배상 금액 1.5억원 이상’으로 하도록 조문을 개정 하여 단순 기재하는 형식적 절차로 비용추계 해당 없음

4. 작성자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과 주무관 김정원(02-399-9513)

【별첨 3】

< 별지 제5호 서식 >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예시)(제14조 관련)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건	조 치 내 용
	- 제출 의견 없음	

【별첨 4】

2022년도 제1회 교육규제완화위원회 심의 결과

1. 개최일자 : 2022. 12. 20.(화) 13:00

2. 심의안건

가. 제2022-1호 「서울특별시 학원 배상 책임보험 보상한도 상향안」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비·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관련

나. 제2022-2호 「서울특별시 학원 등 행정처분을 위한 별점 신설 및 강화안」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비·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관련

3. 심의결과

가. 제2022-1호 “원안가결”

- 규제 사무명: 서울특별시 학원 배상 책임보험 보상한도 상향
- 규제 강화안:

- ‘학원배상책임보험 보상 한도 상향

現. 1인당 1억원 이상 → 1인당 1.5억원 이상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1억원” 을 “1.5억원” 으로 한다.

제2조(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학원·교습소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1. 1인당 배상금액 1.5억원 이상

【별첨 5】
[별지 제3호서식]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제9조 관련)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	감사관	변호사	전경석
입안주관부서	감사관	통보일	2022. 10. 21.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안 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부의 권고에 따라 학원·교습소의 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를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 보상한도 금액에 적합하도록 학원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상향하는 것임. -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부패 유발 요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원안동의”

【별첨 6】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통보 확인서

관리번호	2022A서울교육019			
정책명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서명	평생교육과		
	담당자명	김정원	전화번호	02-399-9513
담당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서명	민주시민생활교육과		
	담당자명	홍정미	전화번호	02-399-9675
체크리스트 제출일자	2022년 10월 18일			
완료(제외) 통보일자	2022년 10월 18일			
<p>해당 과제는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제출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2년 11월 11일</p>				

【별첨 7】

자치법규 · 단위사업 학생
인권영향평가 검토의견서

자치법규 (단위사업)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담당부서	평생교육과	담당자	직급	성명	김정원	
평가담당	학생인권위원회 기획홍보소위원회	고태훈, 공율, 권정우, 김희진, 노희창, 송지은				
해당조항	검토의견				검토결과	
-	<p>영향평가 검토 결과 원안동의 의견임.</p> <p>다만 규칙 개정안의 경우, 개정 과정에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입법예고 등의 절차에서 학생들에게까지 그 내용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자체점검하였는 데, 개정이유가 "학원 등의 등록말소(폐지) 및 정지 처분이 학습 자에게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행정처분의 감경·조정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는 것"에 있다면, 더욱이 학습자(학생) 당사자의 의견청취가 필요하겠음.</p> <p>이에 조례 개정 과정 또는 개정 이후 시행 과정에라도, 처분의 판단 기준에 학생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추가의견을 드림</p>				원안동의	

관계법규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25호, 2021. 8. 17., 타법개정]

제4조(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③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교습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학원·교습소의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2022. 4. 5.] [법률 제18684호, 2022. 1. 4., 일부개정]

제76조의2(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이 갖추어야 할 기준 등) ①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을 제정·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다음 각 호의 기준이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손해를 적절히 보상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의 보상 한도를 정할 것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2. 8. 23.] [대통령령 제32877호, 2022. 8. 23., 일부개정]

제84조의2(재난안전의무보험의 보상 한도 등) ① 법 제7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의 보상 한도”란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금액의 보상 한도를 말한다.

1. 사망의 경우: 1억 5천만원 이상
2. 부상의 경우: 3천만원 이상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는 신체적 장애가 생긴
경우: 1억 5천만원 이상